

일련번호	no.3-1	감사자	지방시설○급 ○○○ 지방시설○급 ○○○	공 개 () 비공개(○)
신문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등14개기관 (○○○등14개기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 통보 · 주의요구

제 목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관리·감독 소홀

소 관 기 관 ○○○ 등 14개 기관

조 치 기 관 ○○○ 등 14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 등 14개 기관에서는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6건의 관급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자로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등 관련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부당특약 약정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에서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제83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2조제12항에서 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을 관련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책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지침」 V.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 2. 「하도급법」 제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특약 해당여부 심사기준 <부당특약 예시> ①,②에 따르면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과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부당특약 등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관(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하도급계약서(특수조건 포함) 및 현장설명서상에 부당 특약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등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 등 14개 기관에서는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수급인인 ○○종합건설(주)가 2019.06.24. 하수급인인 (주)○○건설과 토공 및 구조물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현장설명에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비용 일체를 하수급인이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붙임]과 같이 14개 기관 26건의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시 부당한 특약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이 하수급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등 하수급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4. 관계부서 의견

○○○ 등 붙임의 14개 기관은 앞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특약을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등 별표 기재 14개 기관장은

-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진행중인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등 부당특약을 제외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② 하도급계약 통보시 부당특약 약정 확인 및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의조치 하고, (통보)
- ③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하도급법」 제3조의4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통보시 부당특약 약정 검토·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약정 현황

연 번	기관명	공 사 개 요	특 약 사 례
5	경기주택 도시공사	- 공사명 :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수급인 : (주)○○건설 하도급계약 : 조경공사	- 안전사고 발생시 수급사업자는 재해자측에게 배상한다는 약정

일련번호	no.3-2	감사자	지방시설○급 ○○○ 지방시설○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등33개기관 (○○○등33개기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 통보 · 주의요구

제 목 하도급계약 지연배상금률 관리·감독 소홀

소 관 기 관 ○○○ 등 33개 기관
조 치 기 관 ○○○ 등 33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 등 33개 기관에서는 “○○~○○간(2차) 도로확포장공사” 등 137건의 관급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자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적정한 지연배상금률 약정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지연배상금률은 공사일 경우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는 1000분의 0.8,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그 밖의 계약은 1000분의 1.3,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은 1000분의 2.5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을 공사내용,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제83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2조제12항에서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관(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이 「지방계약법」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한 특약을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등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 등 33개 기관에서는 ‘○○~○○간(2차) 도로확포장공사’의 수급인인 ○○○○건설(주)가 2017.12.10. 하수급인인 (주)○○○○○와 구조물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연배상금률을 법적 기준인 0.05%보다 높은 0.1%로 약정하여 통보하였는데도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붙임]과 같이 966건의 하도급계약(도급계약 137건)에서 지연배상금률을 부당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발주자가 수급인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지연배상금률 검토를 소홀히 하여 하수급인에게 과중한 지연배상금 부과로 하수급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4. 관계부서 의견

○○○ 등 별표에 기재된 33개 기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지연배상금률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등 별표 기재 33개 기관장은

-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진행중인 하도급계약에서 지연배상금률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특약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에 부합하게 수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② 하도급계약 통보시 지연배상금률 산정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의조치하고, (통보)
- ③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통보시 지연배상금률 산정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하도급계약 지연배상금률 과다산정 현황

연번	구분	공사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공종	하도급 계약일	지체상금(%)	
							계약	법적
203	GH공사	○○○ ○○○○ ○고등학교 건축공사	주○○기업공사 외2	주○○○○○○	파일공사	18.11.21.	0.1	0.05
204				○○건설(주)	토목공사	18.11.29.	0.1	0.05
205				○○전문건설(주)	기계설비공사	19.01.18.	0.1	0.05
206				○○플랜트(주)	가스배관공사	19.04.09.	0.1	0.05
207				○○○건설(주)	방수공사	19.05.24.	0.1	0.05
208				주○○○건설	습식공사	19.05.24.	0.1	0.05
209				○○석전(주)	석공사	19.05.31.	0.1	0.05
210				주○○○엔지니어링	철골공사	19.05.23.	0.1	0.05
211				주○○○	금속창호공사	19.08.07.	0.1	0.05
212				주○○○○○○	수장공사	19.08.21.	0.1	0.05
213				주○○○○○○	체육관무대공사	19.08.30.	0.1	0.05
214				○○건설(주)	도장공사	19.10.07.	0.1	0.05
215				주○○○○○○	익스펜션조인트공사	19.10.15.	0.1	0.05
216				주○○○○○○○	유리공사	19.10.15.	0.1	0.05
217				○○조경(주)	조경공사	19.10.21.	0.1	0.05
218	GH공사	○○신도시 지구외 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주○○○○○○○	판넬공사(가설사무실)	17.06.13.	0.1	0.05
219				주○○○	가설사무실 설비공사	17.06.15.	0.1	0.05
220				○○전력(주)	전기공사(가설사무실)	17.06.16.	0.1	0.05
221				주○○○건설	포장공사(가설사무실)	17.06.21.	0.1	0.05
222				주○○○토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	17.07.19.	0.1	0.05
223				주○○○○○	보강토옹벽공사	17.08.01.	0.1	0.05
224				주○○○○○○○	IPC 제작설치공사	17.11.20.	0.1	0.05
225				○○○○○종합건설(주)	통로교량공사	17.12.01.	0.1	0.05
226				주○○○엔지니어링	spw옹벽공사	17.12.01.	0.1	0.05

연번	구분	공사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공종	하도급 계약일	지체상금(%)	
							계약	법적
227				㈜○○안전	교통처리시설공사	17.12.12.	0.1	0.05
228				○○산업주식회사	강관파일기초공사	17.12.12.	0.1	0.05
229				○○기업㈜	방음벽설치공사	18.05.18.	0.1	0.05
230				㈜○○○○○○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 설치 공사	18.06.04.	0.1	0.05
231				㈜○○○○○○	프리캐스트 패널공사	18.11.28.	0.1	0.05
232				㈜○○○○엔지니어링	○○교 점검시설공사	18.11.28.	0.1	0.05
233				○○산업㈜	권양기 설치공사	18.11.28.	0.1	0.05
234	GH공사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기업 외 3	○○구조㈜	가설사무실 축조공	17.07.25.	원청비 율따름	0.05
235				㈜○○○○○○	포장공사(가설사무실)	17.07.25.	미기재	0.05
236				㈜○○생태환경	토공사	17.03.06.	미기재	0.05
237				○○토건㈜	우오수공사	17.07.25.	원청비 율따름	0.05
238				○○토건㈜	상수공사	17.07.25.	원청비 율따름	0.05
239				○○건설㈜	감속차로 설치공사	17.06.01.	미기재	0.05
240				○○산업㈜	금속구조물공사	17.06.21.	원청비 율따름	0.05
241				㈜○○조경	수목유지관리공사	17.07.25.	원청비 율따름	0.05
242	GH공사	○○○○○○지하주차장(○○5-2부지) 건축공사	○○건설(주) 외 3	○○건설(주)	토복공사	21.04.01.	미기재	0.05
243				㈜○○○○○○	철근콘크리트공사	21.05.31.	미기재	0.05
244				○○건설(주)	가스설비공사	21.06.03.	미기재	0.05
245				㈜○○○○○○	기계설비공사	21.06.03.	미기재	0.05
246				㈜○○건축	수장공사	21.05.03.	미기재	0.05
247				○○건공(주)	예복시라이닝공사	21.06.03.	미기재	0.05
248				㈜○○○○○○	금속창호공사	21.06.03.	미기재	0.05
249				○○○○○○(주)	습식공사	21.06.03.	미기재	0.05
250				○○○건설(주)	방수공사	21.06.03.	미기재	0.05

연번	구분	공사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종종	하도급 계약일	지체상금(%)	
							계약	법적
251				주○○개발	철근콘크리트공사	20.12.07.	미기재	0.05
252				주○○	흙임뿔칠공사	21.06.03.	미기재	0.05
253				주○○건설	석공사	21.06.03.	미기재	0.05
254	GH공사	○○역세권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수용구역)	주○○종합기술 외 2	주○○○○○○○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공사	17.11.21.	0.1	0.05
255				○○산업(주)	가설방음벽 설치공사	17.12.15.	0.1	0.05
256				(유)○○건설	배수공사	18.01.18.	0.1	0.05
257				주○○○○○○○	MSP 빔제작 및 설치	18.06.28.	0.1	0.05
258				주○○○○산업	철근콘크리트공사	18.06.28.	0.1	0.05
259				주○○	가설도로공 부대공사	18.09.12.	0.1	0.05
260				○○○○○○○산업(주)	저류지공 구조물공사	18.10.31.	0.1	0.05
261				○○건설(주)	교통안전시설공사	19.04.26.	0.1	0.05
262				주○○○○○	교량외장재 설치공사	20.04.01.	0.1	0.05
263	GH공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수용구역)	주○○건설 외 1	주○○○○○	조경공사	21.02.10.	미기재	0.05
264				주○○○○○	수경시설	21.02.26.	0.1	0.05
265	GH공사	○○○○○○○구역 ○○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주○○○○○○○	○○개발(주)	우오수공사	17.02.13.	0.1	0.05
266				주○○○	우오수공사	17.02.21.	0.1	0.05
267				주○○○건설	상수도공사	18.04.11.	0.1	0.05
268				주○○○	수목가이식	17.10.19.	0.1	0.05
269				주○○○○○	GIP 추진공사	17.02.13.	0.1	0.05
270				주○○○○○○○○○○○	복합말뚝 강관보강	18.01.29.	0.1	0.05
271				주○○○건설	실트책킹 추진공사	17.02.13.	0.1	0.05
272				주○○○○○○○	분절프리스트레스트 박스빔공사	18.02.19.	0.1	0.05
273				주○○○○○건설	가로수식재공사	19.10.22.	0.1	0.05
274				주○○○○○○○○○	ITS이설공사	18.08.20.	0.1	0.05

연번	구분	공사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공종	하도급 계약일	지체상금(%)	
							계약	법적
275				○○○○○○(주)	초기우수 처리장치	18.02.19.	0.1	0.05
276				주○○○○○	통신관로공사	19.04.18.	0.1	0.05
277				주○○엔지니어링	오수중계펌프장 설비공사	17.10.23.	0.1	0.05
278				주○○○	교면방수공사	19.04.04.	0.1	0.05
279				○○산업(주)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	19.04.30.	0.1	0.05
280	GH공사	○○○ ○○○○○○○○ 청사신축 건설공사	주○○개발	주○○○○○	조립식가설방음벽	18.08.24.	0.1	0.05
281				(유)○○○○○○	토공 및 부대토목	18.09.03.	0.1	0.05
282				○○산업개발(주)	가설사무실공사	18.09.03.	0.1	0.05
283				○○○○○○○○(주)	가설사무실 설비공사	18.09.17.	0.1	0.05
284				주○○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	18.11.01.	0.1	0.05
285				○○○○(주)	기계설비공사	19.01.07.	0.1	0.05
286				주○○○○건설	가스배관공사	18.12.20.	0.1	0.05
287				주○○○○건설	폐수처리시설공사	18.12.18.	0.1	0.05
288				주○○○○○	방수공사	19.02.11.	0.1	0.05
289				○○○○○○(주)	낙하물방지공사	19.03.13.	0.1	0.05
290				주○○○○○	판넬 및 지붕공사	19.03.27.	0.1	0.05
291				주○○○○○○	잡철물공사	19.04.22.	0.1	0.05
292				주○○건설	습식공사	19.04.22.	0.1	0.05
293				주○○○○○○○	내장공사	19.05.30.	0.1	0.05
294				○○○○○	유리공사	19.05.29.	0.1	0.05
295				○○○건설(주)	조경공사	19.06.10.	0.1	0.05
296				주○○○○○○	석공사	19.11.13.	0.1	0.05
297				○○○○○○○○(주)	클린룸공사	19.11.25.	0.1	0.05

연번	구분	공사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종종	하도급 계약일	지체상금(%)	
							계약	법적
298	GH공사	○○○○(○)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종합건설(주) 외1	주○○기계설비	기계공사	18.09.30.	0.1	0.05
299				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18.10.23.	0.1	0.05
300				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18.11.30.	0.1	0.05
301				○○건설(주)	조경식재공사A	17.03.16.	0.1	0.05
302				주○○○○○○	조경식재공사B	20.10.05.	0.1	0.05
303	GH공사	○○○ 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2-2공구) 관리공사	○○○○건설(주)	○○건설(주)	토공 및 포장공사	19.12.06.	미기재	0.05
304				주○○○○○	자연형돌계단 설치 및 철거공사	19.12.31.	미기재	0.05
305				주○○○○○○	실내건축공사	19.12.06.	미기재	0.05
306				주○○○○○	잡철물공사	19.03.18.	0.1	0.05
307				주○○○○○○○○	수분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19.06.21.	0.1	0.05
308	GH공사	○○○신도시 워터프론트 조경공사	○○산업(주) 외 2	○○건설(주)	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1구역, 3구역)	18.06.30.	미기재	0.05
309				○○○○○○○(주)	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	20.07.28.	미기재	0.05
310				○○건설(주)	토공 및 구조물공사	18.06.30.	미기재	0.05
311				○○○○○○○(주)	기계설비공사	18.06.30.	미기재	0.05
312				○○○○○○○(주)	소방설비공사	18.06.30.	미기재	0.05
313				주○○○엔지니어링	철골공사(건축)	18.06.30.	미기재	0.05
314				주○○○○○○○○	난간설치공사	18.06.30.	미기재	0.05
315				○○건설(주)	목교 및 목재데크 설치공사	20.07.28.	미기재	0.05
316				주○○○건설	습식공사(건축)	18.06.30.	미기재	0.05
317				○○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	18.06.30.	미기재	0.05
318				주○○○○○○	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	20.06.25.	미기재	0.05
319				○○건설(주)	개비온가벽 및 수경설비공사	18.06.30.	미기재	0.05
320				주○○○	경량천정공사(건축)	18.06.30.	미기재	0.05

연번	구분	공사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공종	하도급 계약일	지체상금(%)	
							계약	법적
321				주○○○	실내건축공사	18.06.30.	미기재	0.05
322				○○○○주	석공사(건축)	18.06.30.	미기재	0.05
323	GH공사	○○○○(○) 택지개발 5-2공구 조경공사	(주)○○개발 외 2	○○○○○○주	가설사무실 부대공사	17.08.15.	0.2	0.05
324				○○○○주	가설사무실 설치공사	17.08.21.	0.2	0.05
325				○○○○○○주	조경식재공사	17.11.28.	0.2	0.05
326				주○○산업개발	조경시설물공사	17.12.01.	0.2	0.05
327				○○종합건설주	화장실 신축공사	18.02.26.	0.2	0.05
328				주○○산업개발	시설물유지관리공사	19.08.14.	0.2	0.05
329				○○○○개발주	식재유지관리공사	19.08.14.	0.2	0.05
330	GH공사	○○○○(○) 체○○초등학교 건축공사	(유)○○건설 외 2	주○○토건	철근콘크리트공사	20.01.30.	0.1	0.05
331				주○○토건	토공사	20.01.30.	0.1	0.05
332				○○건설개발주	보령그라우팅공사	20.01.30.	0.1	0.05
333				주○○○○○○	기계설비공사	20.01.30.	0.1	0.05
334				○○건설주	습식방수공사	20.01.30.	0.1	0.05
335				○○건설주	철골공사	20.01.30.	0.1	0.05
336				○○건설산업주	금속창호공사	20.01.30.	0.1	0.05
337				주○○○○○○	석공사	20.01.30.	0.1	0.05
338				주○○○○	조경식재공사	20.01.30.	0.1	0.05
339				주○○○○	가스시설	20.01.30.	0.1	0.05
340				주○○○○○○	실내건축공사	20.01.30.	0.1	0.05
341	GH공사	○○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1-3공구	○○종합건설주 외 2	○○산업주	가설올타리공사	18.11.15.	0.1	0.05
342				○○토건주	토공사	19.01.31.	0.1	0.05
343				주○○○○○○○○	초기우수처리시설 제작 및 설치	18.10.31.	0.1	0.05

연번	구분	공사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공종	하도급 계약일	지체상금(%)	
							계약	법적
344				○○건설주	조기개통구간 관로공사	16.12.06.	0.1	0.05
345				주○○건설	관로공사	17.12.27.	0.1	0.05
346				○○○주식회사	교량배수시설설치	18.10.31.	0.1	0.05
347				주○○	호안공설치공사	18.10.31.	0.1	0.05
348				○○○중공업주	보도육교 강구조물 공사	17.12.27.	0.1	0.05
349				주○○○○○	보차도경계석 설치	19.06.14.	0.1	0.05
350				주○○건설	구조물공사	19.06.14.	0.1	0.05
351				주식회사 ○○건설	경계석 및 보도포장	18.10.31.	0.1	0.05
352				주○○○○	조경식재공사	18.10.31.	0.1	0.05
353				○○○산업주	방음벽설치 및 교량부대시설공사	18.10.31.	0.1	0.05
354				○○○○산업주	하천횡단 보도교공사	18.10.31.	0.1	0.05
355				주○○○	교통안전시설물공사	18.10.31.	0.1	0.05
356				주○○○	식생롤 제작 및 설치	18.10.31.	0.1	0.05
357				주○○○○공영	상하수도설비공사	19.06.14.	0.1	0.05
358				○○○○주	도장공사	19.06.10.	0.1	0.05
359				○○○○○○주	교량 경관시설물 제작설치	19.04.30.	0.1	0.05
360	GH공사	○○○○○계획지구 지구외도로(광역4B)공사	○○○○주 외2	주○○○	복합말뚝공사	17.01.20.	0.1	0.05
361				○○산업(주)	○○○교 가시설공사(1차)	17.01.23.	0.1	0.05
362				주○○건설	○○○교 매입말뚝공사(1차)	17.01.23.	0.1	0.05
363				주○건설	연약지반처리공사	19.06.30.	0.1	0.05
364				○○산업(주)	교량공사	17.12.08.	0.1	0.05
365				주○○○건설	강구조물 제작 설치	18.05.14.	0.1	0.05
366				○○○○건설주	마이크로파일공사	18.11.26.	0.1	0.05

연번	구분	공사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공종	하도급 계약일	지체상금(%)	
							계약	법적
367				주○○○○○	교좌장치설치공사	18.11.26.	0.1	0.05
368				주○○○○○	철근콘크리트공사	19.02.11.	0.1	0.05
369				○○건설산업주	콘크리트 표면처리공사	19.04.11.	0.1	0.05
370				○○건설주	블럭식 보강토옹벽공사	19.04.10.	0.1	0.05
371				주○○○○○○○○○○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9.10.18.	0.1	0.05
372				○○산업주	○○○교 배수시설공사	19.11.12.	0.1	0.05
373				주○○○○○○○	○○○교 보도부 투수블럭 포장공사	20.04.29.	0.1	0.05
374				주○○○○○○○	○○○호선 연결도로구간 연약지반처리공사	20.07.13.	0.1	0.05
375	GH공사	○○택지 1-3공구 조경공사	○○종합건설주	○○○○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	17.05.19.	0.1	0.05
376				주○○○○○○○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	17.05.19.	0.1	0.05
377	GH공사	○○택지 ○○○역세권 공공시설 조성공사	주○○ 외3	(유)○○건설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03.09.	0.1	0.05
378				○○토건주	말뚝공사	20.03.10.	0.1	0.05
379				주○○○○○	방수공사	20.04.25.	0.1	0.05
380				주○○	주차장 구조물공사	20.05.10.	0.1	0.05
381				주○○○○○	주차장 기계설비공사	20.05.10.	0.1	0.05
382				주○○○○○	보행교 상부공사	20.09.03.	0.1	0.05
383				주○○○○○○○	주차장 금속 및 창호공사	20.09.24.	0.1	0.05
384				주○○○○○○○○○○	지하주차장 영구배수공사	20.11.30.	0.1	0.05
385				주○○○	보행교 진동제어장치	21.04.01.	0.1	0.05
386				주○○○○○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21.04.26.	0.1	0.05
387				주○○○○○	석공사	21.05.10.	0.1	0.05

일련번호	no.3-3	감사자	지방시설○급 ○○○ 지방시설○급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등31개기관 (○○○등31개기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 통보 · 주의요구

제 목 하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관리·감독 소홀

소 관 기 관 ○○○ 등 31개 기관

조 치 기 관 ○○○ 등 31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 등 31개 기관에서는 “○○○○○○○○○ 건립공사” 등 134건의 관급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자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적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약정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제1호에서 「건설기본산업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는 계약금액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철도, 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는 100분의 5, 공항, 항만, 석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는 100분의 4,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는 100분의 3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을 공사내용,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제83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2조제12항에서 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관(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이 「지방계약법」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한 특약을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등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 등 31개 기관에서는 ‘○○○○○○○○ 건설공사’의 수급인인 (주)○○종합건설 등 2개 건설사업자가 2019.08.28. 하수급인인 (주)○○건설과 미장, 조적,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 2년보다 높은 3년으로 약정하여 통보하였는데도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붙임]과 같이 620건의 하도급계약(도급계약 134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발주자가 수급인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검토를 소홀히 하여 하수급인에게 과중한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부과로 하수급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4. 관계부서 의견

○○○ 등 별표에 기재된 31개 기관은 앞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등 별표 기재 31개 기관장은

-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진행중인 하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특약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에 부합하게 수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② 하도급계약 통보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의조치하고, (통보)
- ③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통보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하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과다산정 현황

(※ 붉은색 표시 - 법적기준 보다 과도하게 산정)

연번	구분	공사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공종	하도급 계약일	하자보수(%)		담보책임(년)	
							계약	법적	계약	법적
158	GH공사	○○○ ○○○○ ○고등학교 건축공사	주○○○○○○○ 외 2	○○건설(주)	토목공사	18.11.29.	3	2	3	2
159				주○○○	금속창호공사	19.08.07.	3	3	2	1
160				주○○○○○	체육관무대공사	19.08.30.	3	3	2	1
161				주○○○○○○○	유리공사	19.10.15.	3	3	2	1
162	GH공사	○○신도시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주○○토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	17.07.19.	5	3	7	3
163				주○○○○○	보강토옹벽공사	17.08.01.	5	3	2	2
164				주○○○○○	IPC 제작설치공사	17.11.20.	5	3	7	3
165				○○○○종합건설(주)	통로교량공사	17.12.01.	5	5	7	2
166				주○○○엔지니어링	spw옹벽공사	17.12.01.	5	3	2	2
167				주○○○○○	교통처리시설공사	17.12.12.	5	2	2	1
168				○○○○주식회사	강관파일기초공사	17.12.12.	5	3	2	2
169				○○○○(주)	방음벽설치공사	18.05.18.	5	3	2	2
170				주○○○○○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 설치 공사	18.06.04.	5	3	2	2
171				주○○○○○	프리캐스트 패널공사	18.11.28.	5	3	7	3
172				○○산업(주)	권양기 설치공사	18.11.28.	5	3	3	2
173	GH 공사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외 3	○○○○(주)	조경식재공사	14.03.07.	3	3	3	2
174				○○건설(주)	암발파공사	14.07.30.	미기재	3	미기재	2
175				주○○○건설	우오수공사	14.10.15.	10	3	3	3
176				주○○○○○	우오수공사	15.01.13.	10	3	3	3
177				○○○○(주)	토공사	15.03.10.	미기재	3	미기재	2
178				주○○○○○	상수도공사	15.10.07.	미기재	3	미기재	3

179				주○○○○	폐공처리공	14.04.23.	3	2	1	1
180				주○○○○○○○	비탈면보호공사	15.11.23.	미기재	3	미기재	1
181				주○○○○○○○	토공사	17.03.06.	미기재	3	미기재	2
182				○○토건주	우오수공사	17.07.25.	원정비율따름	3	원정비율따름	2
183				○○토건주	상수공사	17.07.25.	원정비율따름	3	원정비율따름	2
184				주○○○○	가로수 식재공사	16.11.08.	미기재	5	미기재	2
185				○○건설주	감속차로 설치공사	17.06.01.	미기재	3	미기재	2
186				○○○○주	금속구조물공사	17.06.21.	원정비율따름	3	원정비율따름	2
187				주○○○○	수목유지관리공사	17.07.25.	원정비율따름	5	원정비율따름	2
188	GH공사	○○○○○○지하주차장(○○5-2부지) 건축공사	○○건설주 외 3	○○건설주	토목공사	21.04.01.	3	3	3	2
189				주○○○○○○	금속창호공사	21.06.03.	3	3	3	1
190				주○○○○	철근콘크리트공사	20.12.07.	3	3	10	5
191	GH공사	○○역세권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수용구역)	주○○○○○○○ 외 2	○○건설주	교통안전시설공사	19.04.26.	2	2	2	1
192	GH공사	○○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경공사(수용구역)	주○○건설 외 1	주○○○○	수경시설	21.02.26.	5	5	3	2
193	GH공사	○○○○○○구역○○지구부지조성공사(1공구)	주○○○○○○○	○○주	소음진동방지시설공사	16.02.12.	미기재	3	미기재	2
194				주○○○○	소음진동방지시설공사	16.02.12.	미기재	3	미기재	2
195				주○○○○○○	수목이식공사	16.02.12.	미기재	5	미기재	2
196				○○○○(주)	토공 및 상하수도	16.03.	미기재	3	미기재	2
197				주○○○○○○○○○	토공 및 교량공사	16.05.	미기재	3	미기재	2
198				○○○○(주)	우오수공사	17.02.13.	미기재	3	미기재	2
199				주○건설	연약지반처리공사	16.03.17.	미기재	3	미기재	2
200				주○○○	우오수공사	17.02.21.	미기재	3	미기재	2
201				주○○건설	상수도공사	18.04.11.	미기재	3	미기재	2
202				주○○○	수목가이식	17.10.19.	미기재	3	미기재	2
203				주○○○○	GIP 추진공사	17.02.13.	미기재	3	미기재	2
204				주○○○○○○○○○ ○	복합말뚝 강관보강	18.01.29.	미기재	3	미기재	2

205				주○○건설	실트잭킹 추진공사	17.02.13.	미기재	3	미기재	2
206				주○○○○○	분절프리스트레스트 박스빔공사	18.02.19.	미기재	3	미기재	2
207				주○○○○○건설	가로수식재공사	19.10.22.	미기재	5	미기재	2
208				주○○○○○○○○	ITS이설공사	18.08.20.	미기재	3	미기재	2
209				○○○○○○(주)	초기우수 처리장치	18.02.19.	미기재	3	미기재	2
210				주○○○○○	통신관로공사	19.04.18.	미기재	3	미기재	2
211				주○○엔지니어링	호수중계펌프장 설비공사	17.10.23.	미기재	3	미기재	2
212				주○○○	교면방수공사	19.04.04.	미기재	3	미기재	2
213				○○산업(주)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	19.04.30.	미기재	3	미기재	2
214	GH공사	○○○○○○○○○○○○○청사신축건설공사	주○○개발	(유)○○○○○○	토공 및 부대토목	18.09.03.	3	3	3	2
215				주○○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	18.11.01.	3	3	10	5
216				○○○○(주)	기계설비공사	19.01.07.	3	3	3.2	2
217				주○○○○○건설	가스배관공사	18.12.20.	3	3	3.2	2
218				주○○○○○	석공사	19.11.13.	5	3	2	2
219				○○○○개발(주)	클린룸공사	19.11.25.	3	3	3.2	1
220	GH공사	○○○산도시 워터프론트 조경공사	○○산업(주) 외 2	○○건설(주)	식재및시설물설치공사(1구역, 3구역)	18.06.30.	5	3	2.2	2
221				○○○○○○(주)	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	20.07.28.	5	3	2.2	2
222				○○건설(주)	토공 및 구조물공사	18.06.30.	5	3	3.2	3
223				○○○○○○(주)	기계설비공사	18.06.30.	5	3	3	3
224				○○○○○○(주)	소방설비공사	18.06.30.	5	3	3	3
225				주○○○엔지니어링	철골공사(건축)	18.06.30.	5	3	5.2	5
226				주○○○○○○○○	난간설치공사	18.06.30.	5	3	2.2	2
227				○○건설(주)	복교 및 복재데크 설치공사	20.07.28.	5	3	2.2	2
228				주○○○건설	습식공사(건축)	18.06.30.	5	3	3.2	3
229				○○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	18.06.30.	5	3	5.2	5
230				주○○○○○	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	20.06.25.	5	3	2.2	2

231				○○건설㈜	개비온가벽 및 수경설비공사	18.06.30.	5	3	2.2	2
232				㈜○○○○○	창호금속공사	16.06.30.	7	2	2.2	1
233				㈜○○○	경량천정공사(건축)	18.06.30.	5	3	1.2	1
234				㈜○○○	실내건축공사	18.06.30.	5	3	2.2	1
235				○○○○○㈜	석공사(건축)	18.06.30.	5	3	2.2	2
236	GH공사	○○○○○(○) 택지개발 5-2공구 조경공사	(주)○○개발 외 2	○○종합건설㈜	화장실 신축공사	18.02.26.	5	3	2	2
237	GH공사	○○○○○(○) 제○○초등학교 건축공사	(유)○○건설 외 2	㈜○○토건	철근콘크리트공사	20.01.30.	5	3	5	3
238				㈜○○토건	토공사	20.01.30.	5	3	5	2
239				○○○○○개발㈜	보령그라우팅공사	20.01.30.	3	3	3	1
240				㈜○○○○○○○	기계설비공사	20.01.30.	3	3	2	1
241				○○건설산업㈜	금속창호공사	20.01.30.	3	3	2	1
242				㈜○○○○○○○	실내건축공사	20.01.30.	5	3	1	1
243	GH공사	○○○○○○계획지구지구외도로(광역4 B)공사	○○○○○㈜ 외2	㈜○○○	복합말뚝공사	17.01.20.	5	3	2	1
244				㈜○○건설	○○○교 매입말뚝공사(1차)	17.01.23.	5	3	10	1
245				㈜○건설	연약지반처리공사	19.06.30.	5	3	2	2
246				○○산업(주)	교량공사	17.12.08.	5	3	2	2
247				○○건설산업㈜	콘크리트 표면처리공사	19.04.11.	5	3	2	2
248				○○산업㈜	○○○교 배수시설공사	19.11.12.	3	3	3	2
249				㈜○○○○○○○	○○○교보도부투수블럭포장공사	20.04.29.	5	3	2	2
250				㈜○○○○○○○	○○○호선연결도로구간연약지 반처리공사	20.07.13.	3	3	2	1
251	GH공사	○○택지○○○역세권공공시설조성공사	㈜○○ 외3	㈜○○○○○○○	방수공사	20.04.25.	5	3	건산법 따름	2
252				㈜○○○○○○○	주차장 기계설비공사	20.05.10.	5	3	건산법 따름	2
253				㈜○○개발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21.04.26.	5	3	3	1
254				㈜○○○○○	석공사	21.05.10.	5	3	3	2

일련번호	no.4	감사자	지방시설○금 ○○○ 지방시설○금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등22개기관 (○○○등22개기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 관리·감독 소홀

소 속 기 관 ○○○ 등 22개 기관

조 치 기 관 ○○○ 등 22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 등 22개 기관에서는 “○○~○○간(2차) 도로확포장공사” 등 52건의 관급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자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서상 노무비 구분기재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 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을 공사내용,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관(관리관)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하도급계약서상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 등 22개 기관에서는 ‘○○~○○간(2차) 도로확포장공사’의 수급인인 ○○○○건설(주)가 2012.12.23. 하수급인인 (주)○○○건설과 가설교량 설치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상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붙임]과 같이 207건의 하도급계약(도급계약 52건)에서 근로자 임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발주자가 수급인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근로자 임금이 하도급계약서상에 명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압류금지 대상인 노무비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여 공사대금 압류 등 분쟁 발생시 근로자의 노무비 우선 지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를 초래하였다.

4. 관계부서 의견

○○○ 등 별표에 기재된 22개 기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노무비 구분기재 하였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기할 계획이며 공사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등 별표 기재 22개 기관장은

-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진행중인 하도급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노무비를 하도급계약서상에 구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구분기재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②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 구분기재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하도급계약 노무비구분기재 현황

연번	구분	공사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공종	하도급 계약일	노무비	비 고
61	GH공사	○○○ ○○○○ ○고등학교 건축공사	주○○○○○○○ 외 2	주○○○○○○○	수장공사	19.08.21.	미기재	
62				주○○○○○○○	체육관무대공사	19.08.30.	미기재	
63				○○건설주	도장공사	19.10.07.	미기재	
64				주○○○○○○○	익스펜션조인트공사	19.10.15.	미기재	
65				주○○○○○○○	유리공사	19.10.15.	미기재	
66				○○○○주	조경공사	19.10.21.	미기재	
67	GH공사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외 3	주○○○○○○○	토공사	17.03.06.	미기재	
68	GH공사	○○○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2-2공구) 관리공사	○○○○○건설주	○○건설주	토공 및 포장공사	19.12.06.	미기재	
69				주○○○○○	자연형돌계단 설치 및 철거공사	19.12.31.	미기재	

일련번호	no.6	감사자	지방시설○급 ○○○ 지방환경○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등30개기관 (○○○등30개기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통보 · 주의 요구

제 목 선급금 지급·정산 및 관리·감독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 등 30개 기관

조 치 기 관 ○○○ 등 30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 등 30개 기관에서는 “○○○○○○○○ 건설공사(건축,토목)”공사 등 각 소관업무별 114건의 사업을 추진하며 발주자로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았을 때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 선급금 지급·정산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여야 하고, 선금지급일(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른 연리 15.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선급금의 현금 배분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선금을 지급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을 청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3조 및 제12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에 대해서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등 30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 공사감독자,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했고,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선급금 미지급이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라는 입증자료를 받아 확인하여야 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급금이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 등 30개 발주기관에서는 “[붙임] 하도급계약 선급금 지급 현황” 과 같이 “○○○○○○○○○ 건립공사(건축,토목)” 등 114개 사업 580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15일 이내에 선급금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하수급인의 명의로 선금포기 각서가 수급인에게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급금이 미지급되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III. 18.탈법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예시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상담사례(2016. 7. 25.)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자기의 자율적인 의사로 선급금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여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에 따른 참작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급인은 선급금 미지급이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으로부터 선급금 미지급이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라는 입증자료를 받아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급금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4. 관계부서 의견

○○○ ○○○○과 등 9개 기관에서는 하수급인이 선급금 수령을 포기한 것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이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임은 명확하고 선급금 미지급이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참작하여 선급금 포기 각서 제출에 강요가 있었는지 또는 선급금 반환 청구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치할 사항

〇〇〇 외 30개 기관장은

- 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의조치하고, (통보)
- ② 앞으로,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선급금이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하도급계약 선급금 지급 현황

연번	발주기관	부서	공사명	원도급사(대표사)	하도급종종	하도급사	하도급 계약일	원도급 수령일	하도급 지급일	미(지연)지급 사유	비고
171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가설교량공사	주○○건설산 업	2017-07-26	2019-05-21	2019-06-10		15일초과(684 일)
172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IPC거터 제작설치공사	주○○○○○	2017-11-20	2019-05-21		업체포기	미지급
173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통로교량공사	○○○○○종 합건설주	2017-12-01	2019-05-21	2019-06-10		15일초과(556 일)
174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교통처리시설공사	주○○○○○	2017-12-12	2019-05-21		업체포기	미지급
175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IC우회 가설교량공사	주○○○○○ ○○○	2017-12-26	2019-05-21	2019-06-10		15일초과(531 일)
176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교인상공사	주○○○건설	2018-02-05	2019-05-21		업체포기	미지급
177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장치공사	주○○○○○	2018-06-04	2019-05-21		업체포기	미지급
178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프리캐스트 패널공사	주○○○○○	2018-11-28	2019-05-21		업체포기	미지급
179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권양기 설치공사	○○산업주	2018-11-28	2019-05-21		업체포기	미지급
180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교 점검시설공사	주○○○○ 엔지니어링	2018-11-28	2019-05-21		업체포기	미지급
181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잔여분	○○건설주	2018-12-17	2019-05-21	2019-06-10		15일초과(175 일)
182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교 교면포장공사	○○○○○주	2019-05-17	2019-05-21	2019-06-11		15일 초과(25일)
183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신도시 지구외도로(대로1-5호선) 확장공사	○○○○○○○주	○○교 콘크리트 보호도장	주○○○	2019-10-30	2019-05-21	2019-11-21		15일 초과(22일)
184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주식회사	건축공사	○○○○주	2014-04-25	2016-06-27		업체포기	미지급
185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주식회사	토공	○○산업주	2014-09-02	2016-06-27		업체포기	미지급
186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주식회사	후.오수공	주식회사○○ 건설	2014-10-15	2016-06-27		업체포기	미지급
187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주식회사	구조물공	○○산업주	2015-03-10	2016-06-27		업체포기	미지급
188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주식회사	토공	○○산업주	2015-08-07	2016-06-27		업체포기	미지급
189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주식회사	포장공	주식회사 ○○○○○	2015-09-23	2016-06-27	2016-06-30		15일초과(281 일)
190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주식회사	비탈면보강공	주○○○○ ○○	2015-11-23	2016-06-27	2016-06-30		15일초과(220 일)
191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주식회사	비탈면녹화공	주○○○○ ○○	2016-06-06	2016-06-27		업체포기	미지급
192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주식회사	후.오수공	○○토건주	2016-07-01	2016-06-27		업체포기	미지급

연번	발주기관	부서	공사명	원도급사(대표사)	하도급종	하도급사	하도급 계약일	원도급 수령일	하도급 지급일	미(지연)지급 사유	비고
193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주식회사	상수도공	○○토건(주)	2016-07-07		2016-08-29		15일 초과(53일)
194	경기주택 도시공사	○○신도시 사업단	○○○ ○○○○지구 부지조성공사 1공구	○○○○ 주식회사	지상물절거공	주○○	2015-04-29	2016-06-27		업체포기	미지급
195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수용구역)	○○○○○○○	가설건축물축조	(주)○○○○ ○○	2017-11-21	2020-02-19		선급금 포기	미지급
196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수용구역)	○○○○○○○	배수공사	유한회사○○ 건설	2018-01-18	2020-02-19		1차분 미정산	미지급
197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수용구역)	○○○○○○○	MSP빔 제작설치	(주)○○○○ ○○	2018-06-28	2020-02-19		선급금 포기	미지급
198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수용구역)	○○○○○○○	SPC빔 제작설치	(주)○○○○ ○○	2018-06-28	2020-02-19		선급금 포기	미지급
199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수용구역)	○○○○○○○	저류지 구조물공사	○○○○○○ ○○○(주)	2018-10-31	2020-02-19		선급금 포기	미지급
200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수용구역)	○○○○○○○	교통안전시설공사	○○건설(주)	2019-04-26	2020-02-19		선급금 포기	미지급
201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수용구역)	주○○○건설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주○○○○	2019-10-10	2020-03-20		선급금 포기	미지급
202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1-3공 구	주○○○종합건설	가설올타리공	○○산업(주)	2014-04-11	2018-01-30		선급금 포기	미지급
203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1-3공 구	주○○○종합건설	초기우수처리시설 제작 및 설치	(주)○○○○ ○○○	2014-08-31	2018-01-30		선급금 포기	미지급
204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1-3공 구	주○○○종합건설	관로공사	주식회사 ○○건설	2015-04-14	2018-01-30		전차 선급금 미정산	미지급
205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1-3공 구	주○○○종합건설	교량배수시설설치	○○○ 주식회사	2015-04-24	2018-01-30		선급금 포기	미지급
206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1-3공 구	주○○○종합건설	보차도경계석 설치	(주)○○○○ ○	2016-06-29	2018-01-30		선급금 포기	미지급
207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1-3공 구	주○○○종합건설	구조물공사	주식회사 ○○건설	2016-10-04	2018-01-30		전차 선급금 미정산	미지급
208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1-3공 구	주○○○종합건설	경계석 및 보도포장	주식회사 ○○건설	2017-05-08	2018-01-30		선급금 포기	미지급
209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1-3공 구	주○○○종합건설	식생물 제작 및 설치	(주)○○○	2018-04-02	2018-01-30		선급금 포기	미지급
210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1-3공 구	주○○○종합건설	교면방수	○○○○○○(주)	2018-05-09	2018-01-30		선급금 포기	미지급
211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처	○○택지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1-3공 구	주○○○종합건설	미끄럼방지포장	○○○○(주)	2019-05-09	2018-01-30			미지급

일련번호	no.7	감사자	지방시설○금 ○○○ 지방환경○금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등16개기관 (○○○등16개기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 통보 · 주의 요구

제 목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 등 16개 기관

조 치 기 관 ○○○ 등 16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 등 16개 기관에서는 “○○~○○간 도로확장공사” 등 각 소관업무별 40건의 사업을 추진하며 발주자로서 수급인이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그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금액 증액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6에 따르면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67호)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아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3조 및 제12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에 대해서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등 16개 기관의 계약담당자, 공사감독자,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 소관업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수급인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 통보하고 하도급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고,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를 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 등 16개 기관에서는 “[붙임]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금액 미조정 현황”과 같이 “○○~○○간 도로확장공사” 등 40개 사업 247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수급인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았음에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4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하도급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았음에도 수급인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급인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늘려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부서 의견

○○○ 등 16개 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물가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하도급계약의 경우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등 16개 기관장은

- ① 진행 중인 사업 중 수급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도 아직 하수급인의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② 수급인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후 하수급의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의조치하고, (통보)
- ③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 조정 등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금액 미조정 현황

연번	기관	부서	공사명	시공사(대표사)	계약금액 (백만원)	하도급종종	하도급사	계약금액 (백만원)	비고
74	경기주 택 도시공 사	○○사업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수용구역)	○○○○○○○	35,304	MSP빔 제작설치	(주)○○○○○○○	398	
75	경기주 택 도시공 사	○○사업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수용구역)	○○○○○○○	35,304	SPC빔 제작설치	(주)○○○○○산 업	257	
76	경기주 택 도시공 사	○○사업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수용구역)	○○○○○○○	35,304	저류지 구조물공사	○○○○○○○ 산업(주)	1,444	
77	경기주 택 도시공 사	○○사업처	○○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1-3공구	주○○중합건설	51,961	하천횡단 보도교공사	○○○○○산업(주)	265	

일련번호	no.8	감사자	지방시설○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등 15개 기관 (○○○ 등 15개 기관)	처분요구 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통보·주의요구

제 목 보험료 사후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등 15개 기관

조 치 기 관 ○○○ 등 15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 등 15개 기관에서는“○○○ ○○○○○○○○○○ 신축공사” 등 23건의 관급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성대가 등으로 모두 2,148,040천 원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정산·지급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

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의 정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제47조, 제77조 및 제131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납부내역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공사관리관은 같은 지침 제12조 제1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공사관리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청구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일용근로자와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직접노무비 대상인 상용근로자에 한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만약 보조 작업에 종사한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 간접노무비 대상*인 경우에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위 공사의 계약담당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공사관리관은 상용근로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상용근로자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여 직접노무비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하수급인의 현장 관리인력(현장대리인, 공무, 공사담당 등)과 건설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배치 인력(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만을 확인하고 [별표]와 같이 747,866천 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정산·지급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등 별표에 기재된 15개 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청구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에서 정한대로 상용근로자가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철저히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 등 별표 기재 15개 기관장은

- ① [별표]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내역(상용근로자)”에 기재된 계약 건의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상용근로자에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에 맞게 다시 정산하는 등의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시정)
- ② 보험료 사후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의조치하고 (통보)
- ③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에 따른 보험료 사후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내역

(단위 : 천원)

발주 기관	부서	공사명	지급액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정산사유	비고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		
경기주 택도시 공사	○○사업단	○○○○○○○ 지하주차장(○○5-2부 지) 건축공사	246,464	85,636	148,869	11,959	184,066	77,439	99,485	7,142	62,368	8,197	49,384	4,787	사업장단위 납입확인서	

일련번호	no.9	감사자	지방시설○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등 24개 기관 (○○○ 등 24개 기관)	처분요구 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통 보

제 목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

소 관 기 관 ○○○ 등 24개 기관

조 치 기 관 ○○○ 등 24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 등 24개 기관에서는“○○○ ○○○○○○○○○○ 신축공사” 등 47건의 관급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 명시)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 ○○○○○○○○○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주)를 비롯한 총 89개 건설사업자는 기간제(일용)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의 근로조건 및 날인 등을 누락하였다.

그 결과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증명 등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 등 별표 기재 24개 기관장은

- ① [별표]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에 기재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하는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

발주기관	부서	공사명	건설사업자	누락사항	비고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업단	○○○○○○○ 지하주차장 (○○5-2)부지 건축공사	○○○○○○○	휴일·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직인	
	○○사업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수용구역)	취○○○○○	임금의 지불방법(지급일)	
			취○○○○○	휴일·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사업처	○○○○○○계획지구 지구외도로 (광역4B) 공사	○○○○○(주)	임금의 지불방법(지급일)	
		○○택지 ○○○역세권 공공시설 조성공사	(유)○○건설 (주)○○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날인	